



## 차량관리 규정

제정일	2014. 5. 1
개정일	
개정차수	차
담당부서	관리과

### 제 1 장 총 칙

제 1조 (목적) 이 규정은 동서울대학교(이하 “본교”라 한다) 소유 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, 안전하고 효율적인 업무 수행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.

제 2조 (주관 부서) ① 본교의 차량관리는 관리과에서 주관한다.

② 관리과는 다음과 같이 업무 수행을 한다.

1. 차량 보험의 신규 가입 및 갱신, 보험료 납부
2. 차량의 배정, 청결 및 관리 상태 점검
3. 차량 정비, 수리에 대한 검토 및 조치
4. 유류 지원
5. 사고처리
6. 차량관리대장의 작성 및 보관
7. 차량의 임대, 매각, 폐차
8. 기타 차량 관리에 관한 업무

제 3조 (차량 구분) 차량은 전용차량, 공용차량, 작업차량의 3종으로 구분한다.

1. 전용차량 : 개인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개인에게 배치된 차량
2. 공용차량 :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공용으로 배치된 차량
3. 작업차량 : 작업을 위하여 배치된 차량

제 4조 (차량의 용도) ① 전용차량은 전용 사용자 이외의 사용을 금한다.

- ② 공용 차량은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교직원이 공동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.
- ③ 학교 제반 차량은 공용 업무에 한하여만 사용할 수 있다.

### 제 2 장 운 행

제 5조 (사용승인 및 배차) ① 차량운행 사용승인 범위는 공무수행을 원칙으로 한다.

- ② 차량사용은 시설물사용신청서에 의하며 신청순위와 업무의 완급을 보아 배차한다.
- ③ 본교 학생들의 학술적인 활동이나 행사를 위한 사용은 학생처 또는 산학취업처를 경유하여 관리과에 신청한다.
- ④ 공휴일 및 근무시간 외 긴박한 상황이 발생하여 차량 운행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으로 운행할 수 있다.
- ⑤ 지방 출장 배차의 경우 24시간 이전에 문서로 요청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.

제 6조 (운행) ① 운전자는 차량 배차 운행시간을 염두해야 하며 차량의 입·출고 사항은 관리과에

통보하여야 한다.

- ② 운전자는 교통법령 및 운전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법규 위반으로 인한 차량에 대한 벌금, 과태료 등은 운전자가 전액 부담한다.
- ③ 운전자는 출장 업무 외에 사적인 일에 본교 차량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.
- ④ 차내에서는 절대 금연하며 항상 청결을 유지하고 안전운행에 만전을 기한다.
- ⑤ 운전자는 차량 운행 종료 후에 지체 없이 본교로 복귀하여야 하며, 주차장에 차량을 주차시키고 차량 키는 관리과에 반납하여야 한다.

제 7조 (보호 관리) ① 각종 차량의 전체 관리는 사무국 관리과 차량 담당 직원이 한다.

- ② 운전기사는 항상 운행 전·후 안전운행을 위한 검차를 실시하고 이상 유무를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운전자는 운행 중 차량 이상 발견 시 즉시 관리과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 8조 (사고의 대처 및 배상 책임) 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관리과에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 공무수행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해당 보험사에 보험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, 다만, 운전자의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운전자에게 일부 또는 일체의 사고 처리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.

- ② 부당 운행을 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시는 행정조치(인사)를 취하며, 운행 중 사고에 대하여는 해당 차량 보험 가입 약관 배상 범위 외의 사항은 운전자가 모든 민·형사상 책임을 진다.
- ③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빙소니 및 사망 사고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중대한 과실 사고에 대하여는 사고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과 비용을 운전자가 부담한다.

1. 신호 위반사고

- 2. 중앙선 침범, 고속도로 상 횡단, 회전, 후진 사고
- 3. 20Km/h 이상의 규정 속도위반사고
- 4. 앞지르기 방법 및 금지 위반사고
- 5.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사고
- 6. 횡단보도상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사고
- 7. 무면허 운전사고
- 8. 음주운전, 약물복용 운전사고
- 9. 보도 침범사고
- 10. 승객의 추락방지 의무 위반사고(개문발차 등)

제 9조 (기타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득하여 시행한다.

#### 부 칙

1. (시행일) 이 규정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